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

성 북 구 의 회

- 목 차 -

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(총괄)	1
● 운 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	7
● 보건복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	13
●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	20
● 행정기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	27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,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■ 감 사 기 간

- 2016. 6. 20. ~ 2016. 6. 28.(9일간)

■ 감 사 주 체

- 4개 상임위원회
 - 운영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도시건설위원회, 행정기획위원회

■ 감사대상기관

- 운 영 위 원 회 : 의회사무국
- 보건복지위원회 : 복지문화국, 보건소, 성북문화재단, 삼선동, 월곡제1동
- 도시건설위원회 : 도시환경국, 안전건설교통국, 마을재생기획단, 동선동, 정릉제2동
- 행정기획위원회 : 기획경제국, 행정국,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, 감사담당관, 성북구 도시관리공단, 정릉제3동, 장위제3동

■ 감사대상사무

- 『지방자치법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
■ 감 사 장 소

- 성북구의회 각 위원회 회의실, 성북구청, 도시관리공단 및 주민센터

■ 위원회별 편성내역

- 감사위원편성

위 원 회 별	감 사 위 원	인 원
운 영 위 원 회	정형진 위원장 외 8인	9명
보건복지위원회	진선아 위원장 외 6인	7명
도시건설위원회	권영애 위원장 외 6인	7명
행정기획위원회	김일영 위원장 외 6인	7명

- 주민센터 감사반

위 원 회 별	감 사 위 원	감사대상 주민센터	인 원
보건복지위원회	진선아 위원장 외 6인	삼선동, 월곡제1동	7명
도시건설위원회	권영애 위원장 외 6인	동선동, 정릉제2동	7명
행정기획위원회	김일영 위원장 외 6인	정릉제3동, 장위제3동	7명

■ 감사 일정

○ 강 평 : 2016. 6. 28(화) 14:00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
위원회별	감사 일정		감사 대상 기관	감사장소
	월 일	시 간		
운영	6.24 (금)	10:00 ~ 18:00	성북구의회	성북구의회 제 4 회의실
	6.27 (월)	10:00 ~ 13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
	6.28 (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보건복지	6.20 (월)	10:00 ~ 18:00	복지문화국 (복지정책과, 어르신복지과, 여성가족과)	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
	6.21 (화)	10:00 ~ 18:00	복지문화국 (생활보장과, 문화체육과, 성북문화재단)	
	6.22 (수)	10:00 ~ 18:00	보건소 (건강정책과, 건강관리과, 의약과, 보건위생과, 보건지소)	
	6.23 (목)	10:00 ~ 14:00	삼선동 주민센터	삼 선 동 주민센터
		14:00 ~ 18:00	월곡제1동 주민센터	월곡제1동 주민센터
	6.24 (금)	10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	6.27 (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
	6.28 (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도시건설	6.20 (월)	10:00 ~ 18:00	도시환경국 (주택정책과, 주거정비과, 건축과, 환경과, 공원녹지과)	성북구의회 제 3회의실
	6.21 (화)	10:00 ~ 18:00	안전건설교통국 (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건설관리과, 도시안전과, 도로과, 치수과)	
	6.22 (수)	10:00 ~ 18:00	마을재생기획단 (마을사회적경제과, 도시재생디자인과)	
	6.23 (목)	10:00 ~ 14:00	정릉제2동 주민센터	정릉제2동 주민센터
		14:00 ~ 18:00	동선동 주민센터	동 선 동 주민센터
	6.24 (금)	10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	6.27 (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
	6.28 (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
행정기획	6.20 (월)	10:00 ~ 18:00	- 기획경제국 (기획예산과, 마을민주주의과, 일자리 경제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) -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	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
	6.21 (화)	10:00 ~ 18:00	- 행정국 (행정지원과, 홍보전산과, 청소행정과, 민원여권과, 지적과) - 감사담당관	
	6.22 (수)	10:00 ~ 18:00	성북구 도시관리공단	도시관리공단 본부
	6.23 (목)	10:00 ~ 13:00	정릉제3동 주민센터	정릉제3동 주민센터
		14:00 ~ 18:00	장위제3동 주민센터	장위제3동 주민센터
	6.24 (금)	10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	6.27 (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2회의실
6.28 (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회의장	

■ 감사방법 및 요령

-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· 청취 및 자료제출요구,
시책 질의 · 답변 순으로 실시
-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, 현지 확인 병행

■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6. 5. 6(금) 까지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’ 제2조

■ 감사진행 순서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 요구사항 보고·청취
- 질의·답변 및 현장 확인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 선언

■ 감사의 한계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
-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금지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(조례 제6조)

■ 제척과 회피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

■ 감사상의 주의의무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의무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

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)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작성
 - 각 위원의 감사결과 의견을 수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 -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및 본회의 의결
- 보고서에는 감사실시 경과와 시정, 처리 요구사항, 건의사항, 기타 감사 의견 등을 포함

■ 강 평

- 일 시 : **2016. 6. 28(화) 14:00**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- 방 법 :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

■ 행정 사항

-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6. 5. 6(금) 까지
- 행정사무감사 시 사무보조직원 : 각 위원회 계획에 따라 시행

붙임 :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.



2016년도

행정사무감사계획서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

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1. 감사의 목적

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’에 따라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.

2. 감사일정 및 장소

- 감사일시 : 2016. 6. 24(금) 10:00
- 감사장소 :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실 (제4회의실)
-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: 2016. 6. 27(월) 10:00
- 행정사무감사 강평 : 2016. 6. 28(화) 14:00

3. 감사대상기관 : 성북구의회 사무국

4. 감사위원회 편성

- 감사위원 : 정형진 위원장 외 8명
- 사무보조 : 정진만 전문위원 외 4명 (담당1, 직원1, 속기사2)

5. 감사실시 범위

- 『지방자치법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 위원회 사무

6. 감사 진행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피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
- 질의, 답변 및 현장확인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 선언

7. 감사 방법

- 자료확인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
-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

8.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6. 5. 6(금) 까지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’ 제2조

9. 감사의 한계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
-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(조례 제6조)

10.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

11. 감사상의 주의의무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

12. 강 평

- 일 시 : 2016. 6. 28(화) 14:00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- 방 법 :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

13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(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)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
- 보고서에는 감사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,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
- 작성방법
 -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
 -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
 - 본회의 의결 (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)

따로붙임 1) 선서문

2)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 1부. 끝.

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

소속위원회	운영위원회	의원명	(인)
해당부서	요 구 서 류 (자 료 명)		비 고
			

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[보건복지위원회 소관]



보건복지위원회

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1. 감사의 목적

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

2. 감사기간

○ 2016. 6. 20(월) ~ 2016. 6. 28(화) [9일간]

3. 감사대상기관

- 복 지 문 화 국 : 복지정책과, 생활보장과, 어르신복지과, 여성가족과, 문화체육과
- 보 건 소 : 건강정책과, 건강관리과, 의약과, 보건위생과, 보건지소
- 성북문화재단
- 동(洞) 주민센터 : 삼선동, 월곡제1동

4. 감사위원회 편성

- 감사위원 : 진선아 위원장 외 6명
- 사무보조 : 황규설 전문위원 외 4명 (담당 1, 직원 1, 속기사 2)

5. 감사장소

-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

6. 감사일정

감사일정	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
월일	시간		
6. 20(월)	10:00 ~ 18:00	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(복지정책과, 어르신복지과, 여성가족과)	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
6. 21(화)	10:00 ~ 18:00	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(생활보장과, 문화체육과, 성북문화재단)	
6. 22(수)	10:00 ~ 18:00	보건소 행정사무감사 (건강정책과, 건강관리과, 의약과, 보건위생과, 보건지소)	
6. 23(목)	10:00 ~ 14:00	삼선동 주민센터	삼선동 주민센터
	14:00 ~ 18:00	월곡제1동 주민센터	월곡제1동 주민센터
6. 24(금)	10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6. 27(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
6. 28(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
7. 감사실시 범위

- 『지방자치법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-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

8. 감사 진행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
- 질의, 답변 및 현장 확인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 선언

9. 감사 방법

- 감사는 자료 확인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

10.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6. 5. 6(금)까지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’ 제2조

11. 감사의 한계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
-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(조례 제6조)

12.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

13. 감사상의 주의의무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

14. 강 평

- 일 시 : 2016. 6. 28(화) 14:00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- 방 법 :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

15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)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
- 보고서에는 감사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,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,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 (조례 제9조)
- 작성방법
 -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
 -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
 - 본회의 의결 (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)

[붙임] 1. 선서문

2.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. 끝.

선 서

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
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,
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
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
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
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16년 6월 일

직 위 :

성 명 :

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

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(도시건설위원회 소관)



도 시 건 설 위 원 회

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1. 감사의 목적

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

2. 감사기간

○ 2016. 6. 20(월) ~ 2016. 6. 28(화) [9일간]

3. 감사대상기관

- 도시환경국 : 주택정책과, 주거정비과, 건축과, 환경과, 공원녹지과
- 안전건설교통국 :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건설관리과, 도시안전과, 도로과, 치수과
- 마을재생기획단 : 마을사회적경제과, 도시재생디자인과
- 동(洞)주민센터 : 동선동, 정릉제2동

4. 감사위원회 편성

- 감사위원 : 권영애 위원장 외 6명
- 사무보조 : 김동성 전문위원 외 4명 (담당 1, 직원 1, 속기사 2)

5. 감사장소

-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

6. 감사일정

감사일정	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
월일	시간		
6. 20(월)	10:00 ~ 18:00	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(주택정책과, 주거정비과, 건축과, 환경과, 공원녹지과)	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
6. 21(화)	10:00 ~ 18:00	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(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건설관리과, 도시안전과, 도로과, 치수과)	
6. 22(수)	10:00 ~ 18:00	마을재생기획단 행정사무감사 (마을사회적경제과, 도시재생디자인과)	
6. 23(목)	10:00 ~ 14:00	정릉제2동 주민센터	정릉제2동 주민센터
	14:00 ~ 18:00	동선동 주민센터	동선동 주민센터
6. 24(금)	10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6. 27(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	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
6. 28(화)	14:00 ~ 18:00	행정사무감사 강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
7. 감사실시 범위

- 『지방자치법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-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

8. 감사 진행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
- 질의, 답변 및 현장 확인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 선언

9. 감사 방법

- 감사는 자료 확인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

10.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감사요구자료 제출 : 2016. 5. 6(금)까지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’ 제2조

11. 감사의 한계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
-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(조례 제6조)

12.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

13. 감사상의 주의의무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

14. 강 평

- 일 시 : 2016. 6. 28(화) 14:00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- 방 법 :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

15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)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
- 보고서에는 감사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,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,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 (조례 제9조)
- 작성방법
 -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
 -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
 - 본회의 의결 (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)

[붙임] 1. 선서문

2.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. 끝.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



성 북 구 의 회

(행정기획위원회)

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

1. 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무 규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- 2016. 6. 20(월) ~ 2016. 6. 28(화) [9일간]

3. 감사대상기관

- 기획경제국 : 기획예산과, 마을민주주의과, 일자리경제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
- 행정국 : 행정지원과, 민원여권과, 홍보전산과, 청소행정과, 지적과
-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· 감사담당관
- 성북구도시관리공단
- 주민센터 : 정릉3동, 장위3동

4. 감사위원회 편성

- 감사위원 : 김일영 위원장 외 6명
- 사무보조 : 이중철 전문위원 외 4명(담당1, 직원1, 속기사2)

5. 감사장소

- 성북구청 4층 아트홀, 도시관리공단, 해당동 주민센터

6. 감사일정

감사일정	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
월 일	시 간		
6.20(월)	10:00 ~ 18:00	- 기획경제국(기획예산과, 마을민주주의과, 일자리경제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) - 교육아동청소년 담당관	성북구청 4층 아트홀
6.21(화)	10:00 ~ 18:00	- 행정국 (행정지원과, 홍보전산과, 청소행정과, 민원여권과, 지적과) - 감사담당관	“
6.22(수)	10:00 ~ 18:00	- 성북구도시관리공단	도시관리공단 본 부
6.23(목)	10:00 ~ 13:00	- 정릉3동 주민센터	해 당 주 민 센 터
	14:00 ~ 18:00	- 장위3동 주민센터	
6.27(월)	14:00 ~	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	구의회 제2회의실
6.28(화)	14:00 ~	강 평	성북구의회 본 회의장

※ 6.24(금)는 운영위원회 행감

7. 감사실시 범위

-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

8. 감사진행 순서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
-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소관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
- 질의·답변 및 현장 확인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 선언

9. 감사방법

- 감사는 자료 확인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

10.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)

- 구청장은 의원의 요구자료는 2016. 5. 6.(금)까지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공무원 출석증언
- 관계공무원의 범위 :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’ 제2조
-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 서식(별첨)

11. 행정사무감사의 한계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)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
-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
-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(조례 제6조)

12.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)
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

13. 감사장의 주의의무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
-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

14. 강 평

- 일 시 : 2016.6.28(화) 14:00
- 장 소 : 성북구의회 본회의장
- 방 법 :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

14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
- 보고서에는 감사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,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(조례 9조)
- 작성방법
 -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 -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채택
 - 본회의 의결(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)

첨부 1. 선서문

2.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청서식 1부. 끝.

선 서

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
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증언함에
있어,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
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
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
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16 년 6 월 일

직위 : 성명 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

